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 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11. 12.(목) 총 2매(본문 2매)	
국토교통부	자동차 정책과	담당자	· 과장 김정희, 사무관 김영건, 주무관 박성준 · ☎ (044)201-3835, 3840, 3841	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화물차 불법 적재장치(판스프링) 근절노력 지속 중

- 화물업계, 불법 적재장치는 ‘21.1월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튜닝기로
- 안전조치 없이 판스프링을 설치·운행한 차량은 지속 단속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판스프링 등을 임의 설치·운행하는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 단속한다고 밝혔다.
 - 국토부는 지난 9월 25일 경찰, 지자체에 단속강화 협조요청하고 경찰, 지자체, 한국교통안전공단(자동차안전단속원) 합동 단속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- 국토부는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화물 업계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, 그간 화물연대와 불법 적재장치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왔다.
 - 이에,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하면서도 화물적재 편의를 고려한 적재장치의 새로운 튜닝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업계는 9만여대 화물차를 ‘21년 1월말까지 적법한 절차*에 따라 튜닝을 완료하기로 하였다.

* 튜닝 절차 : 튜닝 계획 승인→ 튜닝작업→ 튜닝검사

□ 9만여대 화물차량의 적법한 튜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'21년 1월 31일까지는 적재함 지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판스프링 등에 대하여 결박 등 자체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운행하되, 공차 운행 시에는 판스프링 등을 제거한 후 운행하기로 하였다.

○ 안전조치는 탄성고무, 로프, 체인 등을 사용하여 지지대, 받침대 등을 견고히 결박하여 이탈로 인해 도로상에 낙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.

□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운행하거나 공차 상태에서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.

* 불법튜닝 단속기준

법 제34조(튜닝 승인) 위반 시 :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(법 제81조)
법 제37조 :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

□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경찰,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판스프링 등 불법 적재장치가 도로상에 낙하되어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, 그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물적 손실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하였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영건 사무관(☎ 044-201-384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